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이소영 의원, 장혜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내용	진행자 및 발표자
10:00~10:10	• 개회	김우창 연구원(녹색전환연구소)
	• 환영사	이소영 의원, 장혜영 의원
10:10~10:40	발제 1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 : 기후실사의 대두	이상수 교수(서강대학교)
10:40~11:10	발제 2 기후실사 규범의 동향	김종철 변호사(어떤바람 농장)
11:10~11:30	발제 3 기후실사에서의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11:30~12:00	토 론 최우리 기자(한겨레) 나현필 국장(국제민주연대) 강은빈 대표(청년기후긴급행동) 김현주 주무관(국가인권위원회)	좌장 : 조호제 교수(성공회대)
12:00~	• 종합토론	

축사

안녕하십니까. 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오늘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녹색전환연구소, 그리고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를 직접 겪으며 기후재난이 ‘뉴 노멀’이 되었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과거에는 환경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이후 RE100·탄소국경세와 같은 경제의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을 수립하며, 실제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가의 배출량 데이터에 근거해 정부에 질의하고 법을 발의하며 더 나은 기후위기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국가에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맞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에서 1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의 배출량을 모두 합치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RE100과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급망을 포함한 직접·간접 배출 총량을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실사의 동향과 이행방안을 살펴보며 기업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이끌어내는 자리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회의원 이소영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 폭우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호우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크나큰 피해가 발생해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더위 속에서 온열질환자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는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는 기후 위기의 마지노선인 '1.5도 상한선' 준수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례 없는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지 얼마 흐르지 않아 1.5도 이상의 기온상승이 곳곳에서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후 문제를 직시하고 극복해나가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 위기를 가속화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기업들은, 정작 스스로가 초래한 기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최근 ESG, 탄소중립, 지속가능성 등의 키워드가 기업들 사이에 일종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경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관련하여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내 활동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시행을 앞둔 이 법은 기업의 영업전략이 '1.5도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기업들이 주요 경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를 기후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기후공시' 역시, 유럽,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기업의 기후 대응책임과 인권 존중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환경보전의 차원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기업의 기후 대응 의무를 재확인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금융 공공기관들조차 기후공시에 소홀하게 대응하는 등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지금, 기업의 기후 인권 책임 존중 의무와 기후 실사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살펴보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열띤 토론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기업 책임과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 그리고 확장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기후 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경제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맞섬과 동시에 기후정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이소영 의원님과 국가인권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패널 여러분과 현장의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회의원 장혜영

차 례

- ◆ **발제 1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 : 기후실사의 대두** 01
 이상수 교수(서강대학교)

- ◆ **발제 2 기후실사 규범의 동향** 17
 김종철 변호사(어떤바람 농장)

- ◆ **발제 3 기후실사에서의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29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 ◆ **토론**
- 최우리 기자(한겨레) 55
- 나현필 국장(국제민주연대) 59
- 강은빈 대표(청년기후긴급행동) 65
- 김현주 주무관(국가인권위원회) 71

발제 1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 : 기후실사의 대두

이상수(서강대학교 교수)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후실사의 대두

이상수(서강대학교 교수)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2023.8.22. 국회의원회관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이상수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제제기

기후변화 시대에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법, 규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의 문제점: 정부는 기업을 규제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할 의지가 있는가?

-정부 자신의 역할조차 하지 않는다. 공기업 방치, 낮은 목표, NDC의 무시

-정부는 기업을 규제할 능력이 있는가?

-기업에 의한 정부 포획(capture)

-정부는 기업을 규제할 힘이 없을 수 있다. 다국적 기업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를 잘 모를 수 있다. 명령통제의 한계

문제제기

R. Heede (2014, 2015 논문)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누적 합계의 63%가 식별가능한 90개의 '탄소대기업들'(Carbon Majors)에 귀속된다.

-이들은 화석연료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관련 정책을 좌절시키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이들이 이미 보유한 화석연료의 1/3만 2050년 전에 태우면 지구 평균기온은 2도 상승한다.

-국가별 접근의 한계를 지적, 다국적 기업, 개도국 소재의 탄소대기업

요약

기업은 기후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기업은 **기후실사**(climate due diligence)를 해야 한다.

즉, 기업이 자신의 주도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과 자신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측정 한 후, 이를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이 전체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효과적 기후실사를 위한 **기후실사 체제**(climate due diligence regime)를 구축해야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국가의 기후책임
3. 기후변화에 기업의 책임에 관한 논의의 전개
유엔
기후소송
실사법의 등장
4. 종합: 기후실사의 내용과 기후실사 체제
5. 결론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

- 2000년대 중반 이래, 기후변화의 인권적 측면의 포착
 - 이누이트 청원(2006),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 주장
 - 말레 선언(2007), 기후변화의 인권적 측면의 인정
 - 유엔의 수많은 결의, 특별보고관의 보고 생산
 - 특히, 환경과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보이드(D. Boyd) 보고서 (2019)
 - 기후변화협약에 반영. 파리협정 서문에 반영
 - 국내외 기후소송에서 국가의 인권책임 원용, 특히 우르헨다 판결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

- 2000년 중반 이래, 기후변화의 인권적 측면의 포착
 - 환경과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보이드(D. Boyd) 보고서 (2019)
- 62. 국제 인권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국가는 기후변화와 기후행동의 모든 측면에 권리기반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 63. 인권과 환경에 관한 큰 원칙은 세 가지 범주의 국가의무를 명시한다: 절차적 의무, 실체적 의무, 취약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 의무.
- 64. 국제인권법에 맞추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의무를 갖는다. 정보, 참여, 자력화, 구제, 기후 및 인권영향 평가
- 65. 실체적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안전한 기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3자, 특히 기업에 의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

-2000년 중반이래, 기후변화의 인권적 측면의 포착

-기후변화협약에 반영. 파리협정 서문에 반영

기후변화가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정하고,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형평뿐만 아니라, **인권**, 보전에 대한 권리, 원주민, 지역공동체, 이주민,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의 권리 및 발전권에 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고려하여야 함을 인정하며,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

-2000년 중반이래, 기후변화의 인권적 측면의 포착

-기후소송에서 국가의 인권책임 인정, 특히 우르헨다 판결

-Urgenda Foundation v. The State of the Netherlands

-2019.12.20, 대법원

..국가는 자신의 영토로부터의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할 의무를 진다. "**자신의 몫(its part)**"을 수행할 국가의 이런 의무는 **유럽인권협약 제2조와 제8조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많은 사람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에 빠뜨릴 위험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국가는 유럽인권협약 하에서, "**2020년까지 적어도 25%의 배출감소를 바라지 않음으로써**" 인권협약 하의 주의의무[적극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 (73문)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의 장점

- 국가의 기후행동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국가의 기후행동 촉구함
- 정당한 이행을 위한 이론과 도구를 제공한다.
 - 이행의 원칙 (Boyd 보고서)
 - 기존의 국제인권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기업의 인권책임과 기후책임의 연동 흐름

- 유엔의 주도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기후책임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인권약속---> 기후약속(기후책임의 시인, 공급망 포함)
 - 인권실사---> 기후실사(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감축계획 수립 실행, 실행성과 추적, 과정과 성과의 공개. / 이해관계자 참여(소통)
 - 피해구제---> 피해구제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유엔에서의 논의

-OHCHR (2015, 성명), **[이행원칙 인용함]** 기업도 의무 담지자이다. 기업들은 기후영향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면서 기후 완화 및 적응 노력에 책임있게 참여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 (2018, 성명),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도 기후변화 맥락에서 인권의무를** 지며, 기업은 국내법이 존재하는지, 혹은 실제로 집행되는지와 무관하게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Boyd 특별보고관, 71. 기업은 인권정책을 채택하고, **인권실사**를 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인권침해를 구제(remedy)해야 한다. 영향력 관계(**relationship of leverage**)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주체가 인권존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 72. 특별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5개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활동과 자회사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시키기, (2)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시키기. (3) 자신의 공급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4) 자신의 배출량, 기후 취약성, 좌초자산의 위험에 대해 공개하기, (5) 기업관련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유엔에서의 논의

-OHCHR (2021??), “인권, 기후변화 그리고 기업”이라는 문서

-기업이 기후변화를 야기한 문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일부이어야 한다고 하고, **이행원칙이 이를 위한 권위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어 이 문서는 이행원칙의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의 접근이라는 3축을 그대로 기후변화에 적용하여 국가와 기업의 의무와 역할을 서술했다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유엔에서의 논의

-기업과 인권 조약

6.3. 그러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기업이 그들의 규모, 인권침해 위험, 또는 기업활동 및 사업관계 상의 특징 및 상황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실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

6.4. 당사국은 기업이 수행하는 **인권실사**에 다음이 포함되도록 한다.

- a. 운영 전반에 걸쳐 정기적으로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한다.
- ..
- e. 사업관계 내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기업 구조 및 공급업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기업의 운영 전반에 걸친 인권, 노동권, 보건 및 환경, **기후변화** 기준과 관련한 정책, 위험성, 결과, 지표 등의 비재정적 사안에 대해 공개적이고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기후소송에서 기업의 기후실사 책임을 인정하는 흐름

-네덜란드, Milieudefensie 사건 (2019>2021)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청원 (2015>2022)

-네덜란드, NCP 제소 (2017>2019)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기후소송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청원 (2015>2022)

-[1. 이행원칙의 적용]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은 환경과 기후 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부정적 인권영향을 야기, 기여하지 않을 책임을 포함한다. .. 영향의 식별, 평가, 온실가스 배출완화 조치, 보고, 구제의 제공

-기업에 대한 권고: ... i. 실사와 기후와 인권영향평가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취해진 상응하는 조치를 대중적으로 공개할 것.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기후소송

-네덜란드 헤이그 지법, 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PLC (2019>2021)

-인권 규범이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전 범위에 적용된다는 지구적 합의가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불문의 주의의무를 해석함에서 지침으로 적합하다....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소극적 책임이 아니다. 그것은 기업측에서의 행동을 요구한다.... 기업은 **범위3의 배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강축의무는 셀그룹의 활동에 대해서는 결과의무이고,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셀그룹의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현저한 최선의 노력 의무이다

-법원은 ...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 총량을 2019년에 비해 2030년까지 순배출기준 적어도 45% 감축할 것을 명령한다.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기후소송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네덜란드 NCP에 제소 (2017>2019)

-진정인은 ING에게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식별하고 공개하며, 기업이 은행의 간접적 온실가스배출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NCP의 가이드라인 해석: 기업은 자신의 활동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에서도,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영향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함. 따라서 주선(good office)을 제공함.

-합의: 다음 세 지점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짐. (1) ING는 자신의 전체 탄소배출량(즉, 직접 및 간접 배출)을 측정하고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측정 measuring**). (2) ING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를 공개할 의지가 있는가? (**목표 설정, target setting**). (3) ING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파리협정과 일치시킬 의지가 있는가? (**방향설정, steering**)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실사법의 전개

-프랑스 실사법 (2017),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

-2020년 1월 28일 5개 NGO와 14개 지방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거대 석유기업인 토탈 (Total)의 기후약속의 부적절성을 문제삼는 소송을 사법법원에 제기

-독일 공급망 실사법

-환경실사는 제한적

-노르웨이 투명성법

-환경실사와 기후실사는 다루지 않기로 합의함.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실사법의 전개

-EU 실사법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지침) 초안 (2022)

제4조 실사

1. 회원국은 다음의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제5조-11조에 규정된 것 같은 **인권 및 환경 실사** ('실사')를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기후변화 대응

1. 회원국들은, 제2조 제1항 (a)목 및 제2조 제(2)항 (a)목에 따른 **기업** (*EU기업이든 역외기업이든 대기업) 이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채택하도록 보장한다.**
2. 회원국은 기후 변화가 기업운영의 주요 위험이거나 기업운영의 주요 영향으로 식별되거나 됐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자신의 계획에 **배출 감소 목표를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종합:

-기후실사의 내용

-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공개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함
- 현실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함
-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추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종합:

-효과적 기술실사를 위한 지배구조 (=기후실사 체제)의 구축

-실사의무화법의 제정과 집행

-법원

-비사법적 절차

-금융기관

-기업

-시민사회

인권문제로서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책임

-종합: 흐름에 대한 평가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녹색경영”은 기후실사의 기본요소를 결하고 있다.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55조). ..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 실사의 자율적 실시. 즉, 기후실사체제의 미비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2조6호) → 간접배출의 협소한 정의, 이로써 공급망의 방치

결론

- 기업의 기후책임과 관련하여, 기후실사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
 - 기업에 직접 책임 부여, 글로벌의 통일적 기준
 - 명령통제식의 규제 한계 극복,
 - 기업측의 자원을 이용하고, 구체적 타당한 기후행동 도모함.
- 기업으로 하여금 기후실사를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지배구조)을 찾아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실사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 이를 전제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발제 2

기후실사 규범의 동향

김종철(어떤바람 농장 변호사)



기후실사 규범의 동향

김종철(어떤바람 농장 변호사)

배경

1. 기후위기의 핵심은 지구 온난화이고,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업의 활동입니다. 기후학자인 리차드 히데(Richard Heede)는 1850년부터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약 2/3가 90개의 오일, 석탄, 가스 기업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¹⁾. 유럽 의회는 아래에서 보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이하 CSDDD)에 대한 수정안에서 “1988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이상이 단지 100개의 기업에서 나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²⁾. 이렇게 기업의 대량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위기가 초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유럽 의회는 위 수정안에서 “기업의 기후위기에 대한 기여와 기후 위기와 싸우기 위한 그들의 노력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간과 환경뿐 아니라 지구까지 멸절될 절박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기후위기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 환경 뿐 아니라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즉 신속한 전환과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정한 전환에 소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의 기후 책임(corporate climate accountability)을 담보할 규범이 없기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기업의 기후 책임의 핵심적인 수단인 기후실사와 관련된 규범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기후실사 규범이 3가지 과정으로 진화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존의

1) Heede, R. Tracing anthropogenic carbon dioxide and methane emissions to fossil fuel and cement producers, 1854–2010. *Clim. Chang.* 2014, 122, 229–241.

2)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3-0209_EN.html

인권실사 내지 환경실사와 관련된 규범이 해석을 통해 기후실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UNGP의 인권실사 규범과 OECD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의 환경실사 규범처럼 연성규범도 있고 프랑스 실사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처럼 경성규범도 있습니다. 둘째는 기후실사를 명시한 연성규범이 생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6월 개정된 다국적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 그것입니다. 세째는 기후실사를 명시한 경성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실사를 의무화한 경성규범은 국가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3. 기후실사와 관련된 규범의 동향 내지 진화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due diligence라는 용어의 번역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due diligence라는 용어는 그 이전에도 사용했지만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프레임워크와 UNGP에서 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말을 써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실사’, ‘인권에 대한 상세 주의’, ‘인권 실천·점검 의무’라고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이 나오는 이유는 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개념 자체를 국제인권법적인 시각에서 ‘행동기준’으로 봐야하는 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입장에서 ‘절차’로 봐야하는지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³⁾. due diligence는 행동기준과 절차의 측면이 다 있지만 저는 행동기준의 측면을 강조해서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라는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⁴⁾. 하지만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due diligence를 실사라고 사용하겠습니다.
4. 기업의 인권이든 환경이든 기후이든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발견한 사실에 기초해 ‘행동(대응 내지 관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기업이 대응한 효과성을 ‘추적’하며, 어떻게 그 영향에 대응했는지 ‘소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3) Jonathan Bonnitcha and Robert McCorquodale, ‘The Concept of ‘Due Diligence’ i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no. 3.

4) Due diligence라는 말은 1933년 미국의 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법에서는 ‘행동기준’의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주식 딜러가 투자자에게 기업의 중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딜러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의성실하게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대한 해당 정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Taylor, Mark B, Zandvliet, Luc and Forouhar, Mitra, ‘Due Diligence for Human Rights: A Risk-based Approac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Working Paper No. 53, (Cambridge, MA: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2009), p. 2.] Black’s Law Dictionary, 6th ed. (St. Paul, Minnesota, West, 1990)에서도 ‘due diligence’를 같은 취지로 정의하고 있고, 존 러기 역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due diligence’는 의무를 벗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라고 표한한 바 있습니다. (Business and Human Rights: Towards Operationalizing the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Business and Human Rights Report), UN Doc.A/HRC/11/13, 22 April 2009, para. 71).

인권/환경실사 규범의 확장 해석을 통한 기후실사 인정

5. 연성규범인 UNGP과 OECD 가이드라인은 명시적으로 기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초로 기업의 보편적인 인권실사의무를 규정한 경성규범인 프랑스 실사의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기후레짐에서 인권에 대해, 인권레짐에서 기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기후 규범에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1992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후 20년이 지나서였습니다⁵⁾.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이후 최근까지 기후위기는 인권 규범에서 전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생명권이나 건강권 등 인권에 ‘분명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국가 간 최초의 성명인 “Male’ Declaration on the Human Dimension of Global Climate Change”은 2017년에 비로소 나왔습니다⁶⁾.
6.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기후실사 의무의 근거를 인권과 환경실사에 관한 규범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2023년 “Information Note on Climate Change and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를 통해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5) 1992년 채택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은 식량 생산, 기후위기와 그 효과에 관한 정보 접근 등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규범에서 가장 처음 인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회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칸쿤 협정(Cacun Agreement)입니다. 칸쿤 합의는 (토착민의 권리 에 관한 폭넓은 규정도 있지만) 2009년 기후와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A/HRC/RES/10/429)에 주목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 “인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후 유엔 파리 협정을 2015년 채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엔 인권 기구가 로비를 한 결과 파리협정 전문과 본문(젠더 평등, 참여, 지속가능 한 발전,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등)에 인권 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특히 파리 협정 전문은 다음과 같이 체약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정 하고, 당사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젠 더 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형평뿐만 아니라, 인권, 보건에 대한 권리, 원주민, 지역공동체, 이주민, 아동, 장애인, 취약 계층의 권리 및 발전권에 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고려하여야 함을 인정하며...”

6) 지금은 모든 인권 기구에서 기후위기는 주류화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첫 번째 결의는 2008년 A/HRC/RES/7/23로 OHCHR 에게 관련 연구를 요청한 이후 OHCHR은 거의 매년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펴내고 있고, 거의 모든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과 워킹 그룹이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22년 4월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인권과 기후위기 특별보고관’을 임명 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자유권 위원회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조약기구에서 일반논평과 최종논평 그리고 개인청원에 대한 결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키리바티로 돌아가면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 침해 등 박해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뉴질랜드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를 당한 Teitiota가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뉴질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청원에 대해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2019년 청원 자체는 기각하였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Teitiota v. New Zealand사건은 유명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업은 기후실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위 워킹그룹은 기후실사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후위기와 관련해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들은 기후실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⁷⁾). 또한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인권/환경 실사를 구체화하는 가이드스(지침)에서 기후실사를 인권/환경 실사의 일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부문에 관한 3개의 가이드스에서와 2018년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가이드스(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에서 인권/환경 실사의 개념에 기후실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8. 이러한 확대 해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사법기관 혹은 (OECD NCP나 국가인권기구 등)비사법기관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진정입니다. 진정/소송을 통해 인권존중 책임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후실사 의무를 확인받았습니다. 기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권과 관련된 규범은 기후와 관련된 규범을 참조해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실사 규범을 근거로 기후실사 의무를 도출해 낸 대표적인 사건이 로얄 더치 셸(Royal Dutch Shell)에 관한 소송입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Urgenda 사건에서 (조약을 해석할 때 관련 국제 규범을 함께 봐야한다고 규정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근거해서 UNGP이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규범은 기후위기 규범과 함께 해석해야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기업의 기후실사 의무를 인정한 로얄 더치 셸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9. 소송 사건뿐 아니라 비사법적인 구제절차인 OECD NCP 진정(specific instances) 사건에서 NCP는 인권/환경 실사의 외연을 기후 실사까지 확대해서 해석해서 적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네덜란드 NCP가 판단한 ING 은행 사건⁸⁾과 영국 NCP가 판단한 BP 사건입니다⁹⁾. 또한 Carbon Majors 회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에서 필리핀의 국가인권기구 역시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관한 실사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¹⁰⁾.
10. 지금까지는 소송과 진정을 통해 연성규범의 인권/환경실사를 기후실사로 확대하는 해석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럽에 있는 국가(독일, 노르웨이 등)를 중심으로 인권/

7)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business/workinggroupbusiness/Information-Note-Climate-Change-and-UNGPs.pdf>

8) <https://www.oecdwatch.org/complaint/dutch-ngos-vs-ing-bank/>

9) <https://www.oecdwatch.org/complaint/clientearth-vs-bp/>

10) <https://chr.gov.ph/phl-at-the-forefront-of-seeking-climate-justice/>

환경실사에 관한 경성규범이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인권/환경 실사의무를 근거로 기업에 기후실사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실사의무법을 근거로 한 토탈 사건을 포함한 4개의 기후소송입니다¹¹⁾.

기후실사에 관한 연성규범

10. 인권/환경실사 규범이 기후실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되기 시작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 소송/진정입니다. 기후 소송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후실사 규범의 진화 자체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기후 소송의 영향으로 기후실사에 관한 연성규범과 경성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과거보다는 기후실사 규범 형성에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인권/환경실사 규범의 해석을 통해 기후실사와 관련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예측가능한 기후실사에 관한 명확한 법이 생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1. 기후실사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일정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이나 기업대출을 하는 경우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인 적도원칙¹²⁾도 그 예입니다. 또한 OECD 금융 부문에 관한 3개의 실사 가이드선스, 즉 기업대출과 증권인수에 관한 실사 가이드선스(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Corporate Lending and Securities Underwriting)¹³⁾, 기관투자자를 위한 책임있는 기업 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institutional investors)¹⁴⁾, 프로젝트 및 자산 금융 거래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due diligence for project and asset finance transactions)¹⁵⁾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의류 및 신발 부분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가이드선스(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¹⁶⁾ 등도 기후실사를 명하고 있는 연성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후실사에 관한 연성법은 2023년 6월 9일에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입니다.

11)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notre-affaire-a-tous-and-others-v-total/>

12) https://equator-principles.com/app/uploads/EP4_Korean.pdf

13) <https://www.oecd.org/investment/due-diligence-for-responsible-corporate-lending-and-securities-underwriting.htm>

14) <https://mneguidelines.oecd.org/RBC-for-Institutional-Investors.pdf>

15) <https://www.oecd.org/publications/responsible-business-conduct-due-diligence-for-project-and-asset-finance-transactions-952805e9-en.htm>

16) <https://www.oecd.org/industry/inv/mne/responsible-supply-chains-textile-garment-sector.htm>

- 
12. OECD 가이드라인은 1976년 제정된 이후에 7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1년과 2023년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개정에서는 인권/환경 실사 조항을 신설하면서 UNGP과 그 내용을 일치시키려고 하였고 2023년 개정에는 기후실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동물 복지 등을 포함하는 등 대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OECD는 지난 3년 동안 노조, 시민사회, 기업과 51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에 2023년 개정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이름도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으로 바꾸었습니다.
 13. 2023년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 챕터(VI)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대응할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파리협정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저감과 적응 목표에 필요한 탄소 중립에 기여해야 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환 계획을 이행하고, 절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scope 1, 2, 3에서의) 단기, 중기, 장기 저감 목표를 채택하고,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상쇄제도 보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의 감축을 더 우선시 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탄소배출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되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락인효과(잠금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는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챕터(III)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은 중대한 재무적인 위험으로 높은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고용과 노사관계에 관한 챕터(V)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해서 기업은 생태계와 노동자와 커뮤니티의 기후위기 적응을 악화시키는 활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4.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은 고용과 노사관계에 관한 챕터(V)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업은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예방하고 저감하는 등) 실사를 하도록 했고, 노동자들에게 재교육(re-skilling training) 및 향상교육(up-skilling training)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를 (인권/환경/기후)실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본 점, 주변화되고 취약하고 교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강조 한 점, 인권 옹호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도록 한 점, 국가의 의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점(기업은 국가가 국내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자신이 기후관련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한 점),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 한 점 등도 기업의 기후실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2023년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이 기후실사와 관련해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가이드라인 이행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NCP 메커니즘에 대해서 거의 진보가 없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NCP에 진정을 하였다면 최소한 NCP가 절차를 마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해 의견표명(statement)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기후실사에 관한 경성규범

16. 기후실사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성규범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경성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의 경성규범인 “법적 구속력 있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조약안(2021년 8월 17일자 조약안)”¹⁷⁾은 제6조에서 체약국은 기업에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면서 인권실사를 할 때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조약안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기업으로 하여금 그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를 포함한 자신의 사업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 위험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17. 국가적인 차원의 기후실사법 제정 시도는 네덜란드에서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2020년 1월 1일 아동 노동에 관한 의무적인 기업 실사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네덜란드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과 가치사슬에서 일어나는 아동노동을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벌금뿐 아니라 기업의 대표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사의무는 아동노동이외의 다른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나 기후위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소송의 영향으로 2021년 3월 적용범위가 확대된 의무적인 인권실사법안이 네덜란드 의회에 발의가 되었고 2022년 11월에는 6개의 정당이 수정안을 하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위 수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가치사슬 전체에서 인권, 환경 뿐 아니라 기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사의무가 있습니다. 위 법안은 구체 수단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하거나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며, 피해자 등은 소송을 통해 기업에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¹⁸⁾.
18. 기후실사에 관한 경성규범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지역적인 차원인 EU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CSDDD입니다. 지침(directive)라고 부르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EU 회원국은 이 지침을 최소기준으로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만일 회원국의 국내법이 지침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해당 국내법을 적용할 때 관련 지침과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위원회(commission)가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Directive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지침안에 대해 2022년 12월 1일 이사회(Council)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2023년

17)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HRBodies/HRCouncil/WGTransCorp/Session6/LBI3rdDRAFT.pdf>

18) <https://www.mvoplatform.nl/en/wp-content/uploads/sites/6/2021/03/Bill-for-Responsible-and-Sustainable-International-Business-Conduct-unofficial-translation-MVO-Platform.pdf>

6월 1일에는 의회(Parliament)가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입법 권한을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분점하고 있는데다가 위원회, 이사회, 의회의 법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 지침안은 (소위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트릴로그(Trilogue)라는 절차로 돌아 간 상황입니다. EU는 위 법안은 2024년까지 채택을 한 뒤 2025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19. 기후실사와 관련된 의회¹⁹⁾와 이사회²⁰⁾와 위원회²¹⁾의 법안을 다 살펴보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OECD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회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CSDDD 의회안에 따르면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후 자신의 경영 전략과 모델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²²⁾에서 규정한 보고 의무와 일치하게 그리고 파리협정과 EU기후법이 정한 목표(1.5도 제한/2050년 탄소중립)와 일치하게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전환계획은 가치사슬의 온실가스 배출 scope 1과 2(가치사슬에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인 scope 3은 재량에 맡겼는데 이 점에 있어서 개정 OECD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수준이 미치지 못합니다)을 고려하면서 시한을 둔 기후 목표(절대적인 감축목표 역시 OECD가이드라인과 달리 역시 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 계획에는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영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경영자(director)와 이사회에 명확한 의무를 포함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기업의 경우 임금 정책을 설계할 때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경영자에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 이행과 관련해서 CSDDD안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감독 기구(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치해서 그 기구에게 정보요청권과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는)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위 기구가 기업의 실사의무 불이행을 제재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수단은 회원국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CSDDD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업이 적절한 실사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 발생에 기여하거나 손해를 야기한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두고 소송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고, 피해자뿐 아니라 노조와 시민사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071>

20)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024-2022-REV-1/en/pdf>

21)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3-0209_EN.html

22) 2022년 12월 제정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규정한 지침으로 기업은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도 보고해야 합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L2464>

함의

21. 마지막으로 기후실사 규범의 동향 내지 진화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를 통해 인권존중 책임, 특히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경영평가와 연계되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중에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부문의 공기업뿐 아니라 수출입은행이나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금융기관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기후실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위가 인권실사에 대한 확대 해석을 받아들여 기존의 인권경영 권고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현재는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기업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 Carbon Majors에 관한 필리핀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인 결정을 소개한 바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현재 기업을 포함한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차별에 관한 것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OECD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후실사가 명시된 것은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는 수단과 관련해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은 NCP 개혁과 관련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NCP 개혁과 동시에 개정 OECD 가이드라인 중 기후실사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NCP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한국 다국적기업에 대해 진정을 할 때에는 한국 NCP뿐 아니라 그 동안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NCP에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좋겠습니다.
23.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국내에서 기업 인권환경실사의무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관련 법안(“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위 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권환경위험”으로 보고 인권/환경과 관련된 실사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CSDD가 제정이 되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한국 기업들도 기후실사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SDD뿐 아니라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하루 속히 국내에서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제 3

기후실사에서의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기후실사에서의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기후실사 시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현영 변호사

hyjee@igt.or.kr

2023-0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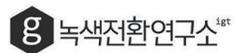


목차

1. ESG 법제(공시 의무화법)의 한계	5
2. 공급망 실사법의 배경과 영향	14
3.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으로의 기후변화 대응	37
4. 기후실사 의무 위반 사례	56
5. 마치며	

2

1. ESG 법제(공시 의무화법)의 한계



ESG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재무 정보에 비해 비재무 정보는 상이한 보고, 평가기준 하에 완화된 검증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시되어 그 정보가 불완전함

Financial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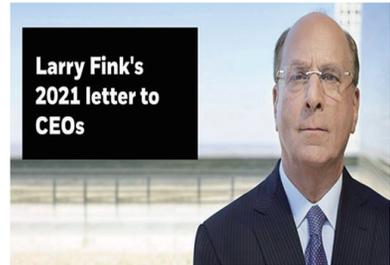
[재무정보 공시]

-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 ✓ 국제회계기준(IFRS) 등의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
- ✓ 엄격한 회계감사
- ✓ 엄중한 처벌

Non-financial Performance

[비재무정보 공시]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 상이한 보고, 평가기준
- ✓ 완화된 검증 제도
- ✓ 약한 제재



- 양질의 데이터 및 일관된 기준 아래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
 - 기후 전략과 배출 감축 계획, 경영 통합 강조
- "비즈니스모델이 넷제로 경제와 어떻게 보조를 맞추지 계획을 공개하고, 2050 넷제로 달성 목표를 기업의 장기전략에 통합할지 공개하라"

Source: 백태영 ISSB 한국위원 자료 4

© IGT 2023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투자 동향

글로벌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산업·기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회수하고,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정책을 기반으로 관련 자금을 확대하고 있음

글로벌 자산운용사 넷제로 이니셔티브 서명 및 이에 따른 목표 및 투자 정책 수립

- 자산운용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2월 결성된 글로벌 연합체인 NZAM(Net-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에는 전세계 273개 자산운용사가 서명기관으로 참여
- 서명기관은 ①50년까지 모든 운용자산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 ②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운용자산 비중에 대한 중간 목표 설정, ③최소 5년 간격으로 중간목표 검토 등을 이행
-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정책 및 지침 수립
-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업·기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회수하고,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정책을 기반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
- 운용사 전반과 개별 펀드상품의 ESG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투자 후 경영참여 및 주주권 행사까지 전범위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이행

- 주주제안 등 관여활동과 의결권 행사를 통해 피투자기업들의 친환경정책을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이행
- 스튜어드십이란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으로,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행위를 말함
- 골드만삭스는 탄소배출량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기업의 탄소배출 공시 감독을 담당하는 이사 재선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침을 보유
- 블랙록은 '20.7월~'21.6월에는 환경 관련 주주제안 72건 중 46건을 지지하였으며, '21.7월~'22.6월 중 제시된 주주제안의 상당수가 지나치게 규범적이거나 이미 기업들이 이행중인 사안이어서 주주제안 지지건수가 줄었다고 설명

© IGT. 2023

SOURCE: KDB 리포트 (22.08.22.)

5

비재무정보 공시의 재무정보화, 표준화, 의무화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비재무정보 공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TCFD 프레임워크가 개발되고, CSRD,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등이 제정됨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에게 재원을 제공할지**를 결정할 때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

- 보고기업은 기업에 노출되는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중요성 평가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맥락에서 이루어짐



미국 SEC는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자들이 기후 관련 일관되며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정보에 입각한 투자, 대출 및 보험 계약 **심사 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채무 또는 주식 증권을 보유한 모든 금융 및 비금융 조직에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권장

- 상장기업 및 기타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기업의 비재무정보, 특히 기후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음

유럽 연합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기업(EU 기업의 非EU 자회사도 포함), 非EU 기업의 EU 자회사, EU 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非EU 기업(연결 기준)까지 포함해 검증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함 요구되는 정보는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전략, 목표, 지배구조, 정책, 인센티브, 실사 절차·영향·구제, 위험, 근로자 대표와의 소통 등임
	SFDR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역내 금융기관에 투자나 상품에 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금융 시장 내에서 환경 및 사회적 특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러한 고려 사항과 관련된 정보 보고 및 공개에 대한 공통 표준을 만들어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함
	EU TR (분류체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의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 '18.3월)」의 일환으로 기후·환경목표에 맞는 민간 투자 목적의 경제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녹색산업 투자를 유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TR은 6가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함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공시 (Climate Disclosure)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EC는 22년 3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기후관련 위험이 미치는 영향, 또는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연차보고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후 관련 공시(Climat-Related Disclosure)'라는 별도 섹션을 두고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안은 제시함 기후관련 공시를 매년 기말 재무제표에 반영, 재무보고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모든 기업들에게 연차 보고서 또는 증권 신고서 상의 별도 '기후 관련 공시' 섹션에 온실가스 Scope 1-3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시기

규모, 세부사항의 차이가 있지만 국내의 규범은 2024~2025년부터 비재무정보 공시의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임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ERS **(한국) 기후공시 규정 개정안, Regulation S-K 5-X** **(FRS) ISSB(기업지속가능성위원회)의 공시기준**

- (EU) 2023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적용
- 공통 표준 27개의 ESG에 대한 11가지 세부 주제별 표준 제언
- (한국) 2024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적용
- 공통 표준 27개의 ESG에 대한 11가지 세부 주제별 단계적 도입 예정
- 투자자 보호가 앞서 목적, 기후중립(TCFD)기반 공시
- (FRS) 2023년 6월 최종안 확정 예정, 도입 시는 국가별 상이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SASB 표준, 기후 관련 재무정보는 TCFD를 기초로 함

영역	범위	제정			
		EU ERS	한국 5-X	ISSB S1	ISSB S2
환경	Scope 1	필수	필수	필수	필수
	Scope 2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사회	노동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인권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거버넌스	비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다양성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Scope 3을 의무공개 요건으로 제정

중요점은 모두 TCFD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하며, Scope 3 관리를 요구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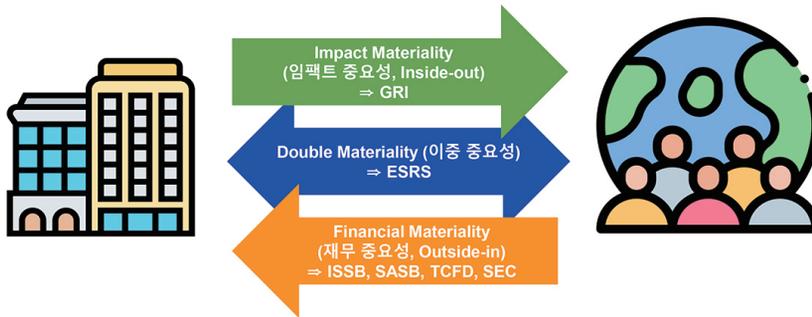
© IGT. 2023

Source : 이한경 예프&파트너스

8

투자자 관점의 한계

ESG는 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법제를 근간으로 하며,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잘 공시·관리하여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으므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런데 이것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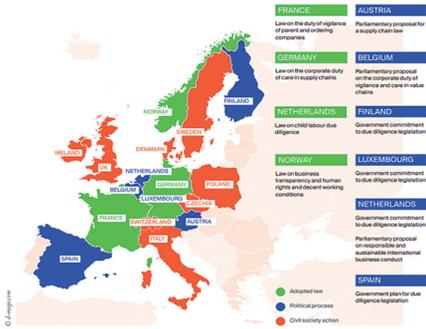


© IGT. 2023

9

왜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이 필요한가

공급망실사법이 제도화되는 이유는 기업이 야기하거나 연루된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이를 가치사슬에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왜 우리는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필요한가?

기업이 글로벌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 기업 가치사슬의 글로벌화로 인해 기업이 하는 일이 전 세계 사람들과 지구에 영향을 미침. 가치 사슬의 글로벌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인권 또는 환경 문제를 예방, 완화하고 인권 또는 환경권 남용을 예방, 완화 및 구제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함.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 기업은 종종 생산의 일부를 환경 및 인권 기준이 느슨한 국가에 아웃소싱함. 이러한 국가에서는 면책특권을 누리며 행동할 수 있어 길고 복잡한 가치 사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함. 또한 기업으로부터의 피해자는 그 실타래를 풀고 책임소재를 정확히 찾아내기가 어려우며, 기업은 공급업체에 그 책임을 종종 떠넘기며 그들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함.

비즈니스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인식이 필요하다

- 기업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자발적 지침이 있음.

© IGT. 2023

Source : IEEP, Discussion Paper, EU Climate Change Due Diligence

10

왜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이 필요한가

기업은 국가와는 별도의 인권존중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은 전체 가치 사슬을 포괄함.



시민사회 성명서 : 기업 지속가능성실사지침의 의미

- 인권 및 환경 영향을 예방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실사 의무는 **전체 가치 사슬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포괄적인 환경 및 기후 실사는 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 법은 효과적인 민사 책임을 규정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회사 실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SOURCE : Germanwatch

© IGT. 2023

11

2. 공급망 실사법의 배경과 내용



공급망(Supply Chain)에서 인권 침해 문제

1990년대 다국적 기업들의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며, 기업과 인권(Business & Human Rights)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음

세계화의 황태자에서 노동 착취 기업으로



Nike Shoe Plant Is Called Unsafe

Continued From Page A1

opened. The company said it had sharply cut overtime, improved safety and ventilation and reduced the use of toxic chemicals.

The company also asserted that the report showed that its internal monitoring system had performed exactly as it should have.

"This shows our system of monitoring works," Mr. Manager said. "We have uncovered these issues clearly before anyone else, and we



in Vietnam. An accounting firm says that led to carcinogens that exceed local legal that respiratory problems are common.

after But he acknowledged that the company had done no measurements to determine whether chemical levels were now low enough to meet legal standards. With the improvements, "it's markedly better than shoe factories



▲ <라이프>가 보도한 나이키 아동노동 © 라이프

201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제정 (1/3)

지난한 논의 끝에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가 제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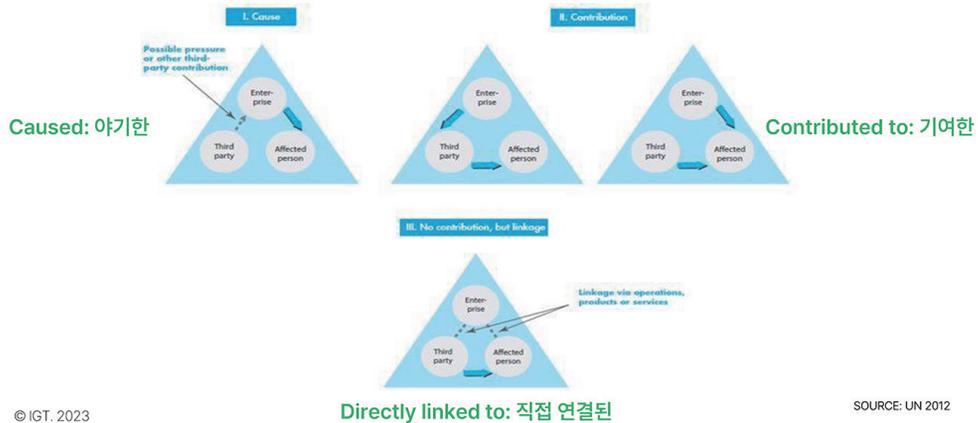
201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제정 (2/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 인권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 인권실사(HRDD)를 실시하며, ㉢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임



201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제정 (3/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는 기업의 책임의 범주를 '직접 야기'한 뿐 아니라 '기여하거나', '직접 연결된' 경우까지 확장시키고 있음



연성규범의 한계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로 의류 생산의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 뒤에 감춰진 만성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 환경이 폭로되었고, 자발적인 기업들의 협약에 의한 공급망 관리의 무용함이 드러남



Who made my clothes?

#WHOMADEMYCLOTHES
FASHIONREVOLUTION.ORG



공급망 실사 국제 기준 및 법률

가이드라인/연성규범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이루어지던 공급망 관리가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고 있음



© IGT. 2023

18

공급망 실사 법률 현황 (1/3)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UNGPs를 반영해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

국가	법명	제정년도	이행 과제
독일	공급망실사법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내 분사, 주요 지사 등이 위치하며 3,000명 이상(2024년부터 1,000명) 고용기업 대상 기업에게 자사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의무 부과
영국	현대 노예법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안 제6부에서 공급망에서의 투명성 규제 존재 영국 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 3,600만 파운드 이상인 곳은 회사 공급망 내에 노예제 및 인신매매 관련 조치/그런 조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문서를 공시
프랑스	기업실사의무화법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가 프랑스에 있고 5,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 또는 해외 소재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게 실사계획수립 및 이행의무 부과 실사계획은 회사의 활동 뿐 아니라 하청업체 및 납품업체 등의 인권 기본적 자유, 환경 등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의무 불이행시 인사상 책임 부담 가능
네덜란드	아동노동실사법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에게 아동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를 거치고 관련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할 의무 부과 위반시 행정 벌금 또는 형사상 처벌
노르웨이	노르웨이 투명성법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작성일 기준 판매 수익 7천만 크로네 이상 등 특정 요건 충족한 기업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급망에 대한 인권 및 근로 조건 등 실사를 거치고 공개할 의무 부과 불이행 시 행정 처분 및 벌금 부과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급망 투명성법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캘리포니아 주 내 총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제품 제조업체는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 관련 기준 준수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

© IGT. 2023

19

공급망 실사 법률 현황 (2/3)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UNGPs를 반영해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의회)	기업실사의무화법	공급망실사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역내기업]: 13,000개 ① 직원 수 250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기업, 또는 ②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이상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하는 최종 모기업 [EU 역외기업]: 4,000개 ① EU 내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또는 ②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이상이고, 역내 순매출액이 4천만 유로 이상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하는 최종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프랑크 내에 설립된 직간접적 자회사의 총업원 수가 두 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5,000명 이상인 경우 회사 및 프랑크 및 해외에 설립된 직간접적 자회사의 총업원 수가 두 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10,000명 이상인 경우 (약 25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부터: 독일 내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 (약 900개) 2024년부터: 독일 내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기업 (약 4,800개) 업종 무관, 독일에 지사 둔 외국계 기업 포함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국제인권협약, 근로조건, 아동노동, 최저연령협약, 강제노동, 인신매매 금지, 뇌물 및 부패 방지, 결사의 자유 등) 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대기·토양·수질·해양·수질 오염, 천연자원 과소비, 폐기물 관리, CITES 협약, 수은 미나타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스톡홀름 협약, POPs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유해폐기물 이동 및 처리 관련 바젤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근본적 자유권 사람의 건강과 안전, 환경 (기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아동노동, 강제노동, 작업장 안전 및 건강, 저임금 노동, 인간건강에 해를 미치는 토양, 수질, 공기오염 및 소음, 불법퇴거, 불법징용, 차별 사유 환경 (수온에 관한 미나타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바젤협약 상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등)
의무 (실사 &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정책에 실사 통합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실사 수행 의무(부정적 영향 파악 및 평가, 실질적 잠재적 영향의 예방·제거·최소화, 피해 구제절차 마련 및 유지, 기업 실사정책 및 조치 효과 모니터링, 독립된 제3자 검증) 실사 의무 이행 내용 등 정보 공개 의무: 자사 웹사이트, 유럽 전자통합공시시스템(ESAP), 이해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계획 (리스크 파악, 분석, 우선순위 부여해 매핑, 리스크 매핑에 따라 협력회사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절차, 리스크 완화, 중대한 위반을 예방 위한 적절한 조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경보 체계 수립 및 리스크의 존재 및 발생과 관련 제보 취합 체계 마련, 실행 조치 및 그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후 조치) 수립 실사계획과 그 효율적 실행 관련 보고서 공개하고 이를 영업보고서에 포함,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 의무: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기업내 공급망 관리 담당자 지정, 리스크 분석, 정책 강령 채택, 예방조치 도입, 시정조치, 고발절차 구축, 문서화 및 보고 보고 의무: 연1회 연차보고서, BAFA에 제출, 7년 동안 웹사이트에 무료 공개 의무

20

공급망 실사 법률 현황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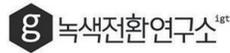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UNGPs를 반영해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의회)	기업실사의무화법	공급망실사법
공급망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운영 및 자회사 기업활동사슬(chain of activity)* 개념으로 공급망 정의하여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초기 발의안에서 공급망 개념이었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비해 규제 대상 완화 *기업의 모든 가치사슬(full value chain)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공급사슬(supply chain)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운영 및 자회사 확립된 사실관계에 있는 공급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공급망 (자체 사업 영역(자회사 포함), 직접 공급업체, 간접 공급업체)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위반 기업에 대해 글로벌 순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손해배상 책임: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와 관련, 지침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하는 이른바 '입증책임 전환'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실사계획 수립과 이행 관련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만일 회사가 의무를 다하였던면 연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매출이 4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연 평균 매출의 최대 2% (기준 3개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기준) 과태료 심각한 의무 위반 시 최대 3년 간 공공조달 사업에서 제외되는 행정제재 가능 인권 침해의 피해 당사자(노조, NGO 포함)는 독일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고, BAFA에 신고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시기] 1,000명 이상, 총매출 3억 유로 이상 기업과 역내 매출 3억 유로 이상 역외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후 우선 적용 ⑥경우 지침 발효 4년 후 적용, ⑦경우 지침 발효 5년 후 적용 [기후 전략 계획] 파리 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전환 계획(배출 감축 목표 포함) 수립 직원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이사의 보상계획과 연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에 대해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사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회사가 이러한 공식 통지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내리고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 조치의 범위] 자체 사업 영역: 즉각 시정조치 직접 공급업체: 즉각 시정조치 어려울 경우 예방, 최소화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간접 공급업체: 기업은 남용에 대한 '입증된 정보'를 획득한 경우에만 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해야 함 [감독기관 모니터링]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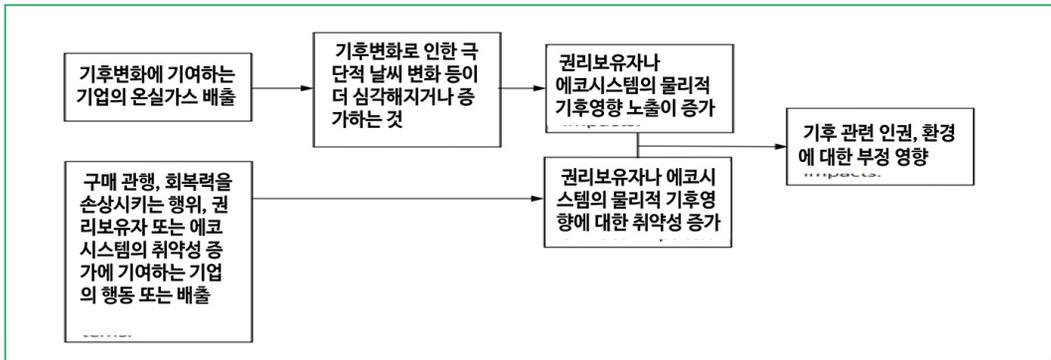


3.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으로의 기후변화 대응



기업이 미치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인권 영향

기업이 기후변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권리보유자나 에코시스템의 기후 영향 노출 또는 취약성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영향을 미침



기후 관련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0년 동안 국제 사회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권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인권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온실가스를 완화·감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권에 대한 직접적 영향

- 미래세대를 포함한 인류를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위험에 빠뜨리게 됨.
- 특히 토착민, 커뮤니티,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환경, 건강, 삶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권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권에 대한 간접적 영향

- 배출 감축 계획, 청정개발체제(CDM)*으로 인한 인권에의 영향
- *청정개발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REDD+* 프로젝트가 땅과 숲에 대한 권리에 미치는 영향
- *REDD+ : 개도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
-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배제하는 것
- 피해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책에 있어 투명성, 책임성, 적절성 부족

Source : Damiola Olawuyi, "Climate Justice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Taking Human Rights Seriously in Climate Actions and Projects"

© IGT. 2023

24

기업의 기후책임

기후변화가 인권문제라고 전제하는 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할 의무를 가지며, 그 연장선에서 이행원칙이 규정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감축할 의무를 짐. 이것은 기후변화에 적용한 기업의 인권준중책임으로, 기업의 기후책임(corporate climate responsibility)이라고 할 수 있음.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종류의 인권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그에 기여하면 안 된다(원칙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전면적으로 즉시 중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원칙에 의할 때, 적어도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할 기업의 의무는 도출할 수 있다(원칙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사업관계를 통해서 인권침해와 직접 연결되어도 안 된다(원칙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업은 사업관계를 통해서도 과도하게 탄소배출하는 기업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원칙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사를 하며, 자신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원칙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탄소중립선언을 하고, 기후실사를 하며, 자신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원칙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실사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방하는 조치로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 인권영향을 방지·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그 성과를 추적하고, 전체 활동과 그 성과를 공개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원칙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이 인권침해를 낳으므로, 기업은 자신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사전에 평가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 즉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원칙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실사를 할 때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원칙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실사를 할 때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원칙 21).

© IGT. 2023

Source : 이상수,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

25

기업의 기후책임 : 온실가스 측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임.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비용 효율적인 배출량 감축 방안을 설계할 수 있음.

영역	기업의 기후책임 (Corporate Climate Responsibility)
사업장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하는 (Scope 1) 또는 기업이 구매한 전기, 열, 증기 및 냉방방 등 간접 배출 (Scope 2)가 포함된 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할 것
공급사슬	그들이 구매, 판매 및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사슬 전반의 배출영향을 측정하고, 가장 감축의 기회가 큰 부문이 어디인지 살펴볼 것
제품	기업은 특정한 제품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음. 제품 수명 주기 온실가스 분석을 통해 기업은 설계, 제조, 판매, 구매 또는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음.

자원이 한정적인 기업은 먼저 자체 운영 및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시작하고, 유사한 제품, 철차의 산업 영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또한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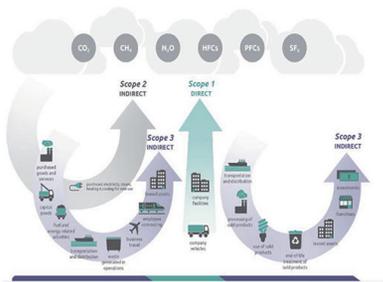
Source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 IGT. 2023

26

[참고] Scope 1~3

온실가스 배출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원천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Scope 1), 회사가 구매한 전기, 열 또는 증기 생성으로 인한 간접 배출 (Scope 2), 회사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타 간접 배출 (Scope 3)로 구분됨.



	Scope 1	Scope 2	Scope 3
자동차	회사 법인 차량이거나 리스한 차량에서 휘발유/경유/LPG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 법인 차량이거나 리스한 차량이 회사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	원재료를 납품받거나 완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타회사의 차량이 연료를 사용
폐기물	자신의 기업이 소각장이거나 매립장인 경우	-	기업이 배출한 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운반되어 처리되는 경우
철도	한국철도공사가 디젤기관차를 운영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전동열차를 운영하는 경우	철도 관련 회사는 아니나 임직원이 기차, 전철로 출퇴근 하는 경우
전기	발전소이거나 비상발전기를 이용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대리점	직접운영하는 매장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운영하는 매장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운영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제품 판매를 위해 다른 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예시) 휴대폰 대리점

© IGT. 2023

SOURCE : <https://brunch.co.kr/@climateinlife/51>

27

[참고] Scope 3

Scope 3는 기업의 가치사슬에 걸쳐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원료의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및 판매한 제품의 사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함. 다른 기업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부터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함.

	카테고리	내용	
Up stream	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공급사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자본재	자본재(Capital Goods)*를 구매할 때 해당 자본재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자본재 : 토지 외 제품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판매/저장/운송 등을 위해 사용되는 생산수단
	3	연료, 에너지 관련 활동	Scope 1, 2에 포함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	운송 및 유통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이와 관련된 운송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5	작업 중 발생 폐기물	소유 or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제 3자 위탁 처리(매립, 소각, 재활용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6	출장	제 3자가 소유 or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구성원의 비즈니스 출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7	구성원 출퇴근	구성원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8	임대 자산	다른 기업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Down stream	9	운송 및 물류	판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운송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10	판매 제품 공정 (가공처리)	판매한 제품을 구입한 제 3자 기업의 제품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간재/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산정)
	11	판매 제품 사용	판매한 제품/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12	판매 제품 폐기	판매한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13	임대 자산	소유 자산 중 다른 기업에 임대한 자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14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Scope 1, 2 배출량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경우에만 산정)
	15	투자	피투자기업에서 발생한 Scope 1, 2 배출량

© IGT.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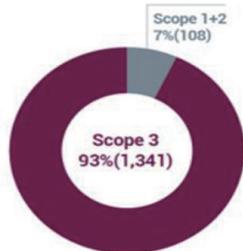
SOURCE: GHG 프로토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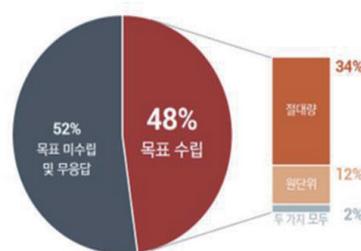
[참고] Scope 3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현황

2022년 CDP를 통해 기업들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Scope 1, 2를 합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8억 톤 CO2e, Scope 3의 배출량은 1,341억 톤CO2e로, Scope 3 배출량이 Scope 1, 2를 모두 합친 것보다 약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단위: % (억CO2e)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국내 공급망 기업 (대상: 2022 CDP 응답 국내 공급망 기업)



SOURCE: <https://allaboutsg.net/>

© IGT. 2023

29

[참고] 제품 수명 주기 온실가스 분석

제품 수명주기평가(LCA)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환경적 사회적 재해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임.

그림 1. LCA 기반 제품 전과정 단계



© IGT. 2023

SOURCE: 한국경제

30

기업의 기후책임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또한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위험 기반의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영역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패션 관련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개선사항 모니터링 방안

리스크 요소	온실가스 감축과 개선사항 모니터링에 대한 예시
섬유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을 디자인할 때 유용성, 비용, 소비자요구 등 뿐 아니라 잠재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함 에컨대, 합성섬유는 원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데 비해, 면이나 린넨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린넨은 농약, 비료, 관개 필요성이 적어 배출량이 더 적은 편임.
원단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관리에 대한 전사적 차원의 조율된 조치를 포함하는 현장 수준의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함. 섹터에 해당하는 최적 가용 기술 문서를 참조하여 최적 가용 기술(BAT)을 구현함 에너지 절약 조치 구현 성능 벤치마킹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본 단계로 정확한 계측기 및/또는 측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운영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 있는 구매 관행을 적용하여 긴급 항공 운송의 필요성을 줄임. 운송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제품 납품과 판매를 고려하여 창고 및 유통센터의 위치를 선정함. 화물 운송업체로 하여금 CO2 배출량 데이터를 추적하고 전달하도록 함. 운송과 관련된 전 사업부 (제조 및 조립 부서, 유통 센터, 고객센터 등)의 배량을 분기별로 추적함.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물 줄이기 포장재에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한 자원을 활용하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사용 사용 기간이 긴 내구성 있는 제품 설계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동에 대한 고객 인식 향상 (매번 세탁하지 않기, 차가운 물로 세탁, 농축 세제 사용 줄이기)

© IGT. 2023

Source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31

기업의 기후책임 : 온실가스 측정과 감축

글로벌 컨설팅업체 BC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측정을 잘하는 기업은 감축에 대한 역량 또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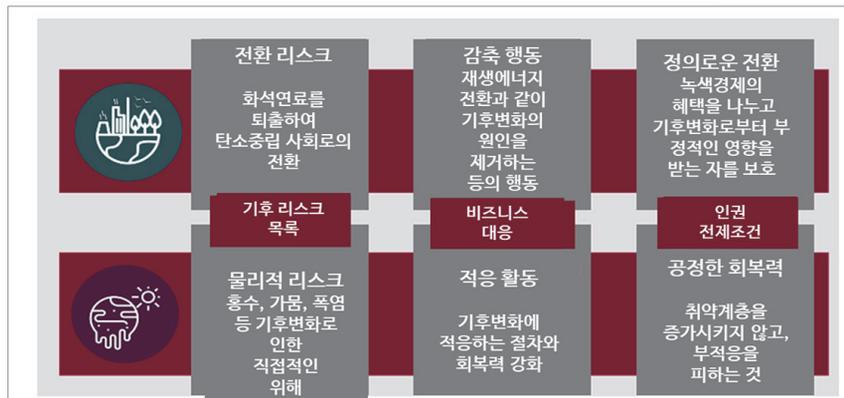
© IGT. 2023

SOURCE : BCG, "CO2 세 BY BCG CARBON EMISSIONS SURVEY 2022"

32

기업의 기후책임 : 기후 대응 전략에 있어 인권

기업이 기후 전략에 따라 전환/물리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회복력이 강조됨.



© IGT. 2023

SOURCE: Shift, "Climate action & Human Rights" (2023. 2.)

33

비즈니스로부터 받는 영향 VS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은 수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1차 공급망)에 대한 영향에만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나 종종 더 큰 인권 위험은 더 멀리 떨어진 영역(N차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위험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참여 프로세스는 실사에 있어 필수적임.



© IGT.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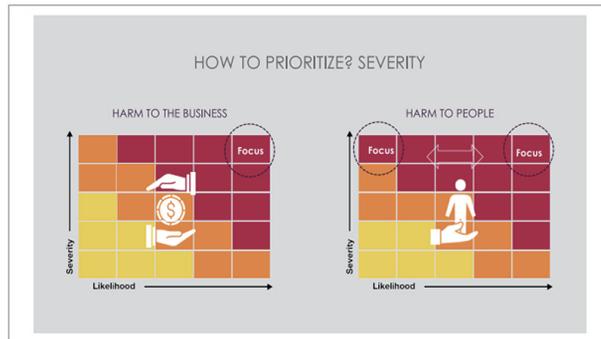
SOURCE: Shift, "Climate action & Human Rights" (2023. 2.)

34

비즈니스로부터 받는 영향 VS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회사가 직면하거나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예: 주요 재정적 손실 위험)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의 기후 행동이 취약한 이해 관계자에 대해 실제적,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심각성도 고려해야 함.

- 규모(Scope)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 정도(Scape) : 권리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 구제불가능성 :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전의 권리 향유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가능성



SOURCE: Shift, "Climate action & Human Rights" (2023. 2.)

© IGT. 2023

35

기업이 기후전략 수립에 있어 던져볼 질문들

기업이 기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인권 영향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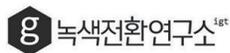
- 회사는 기후 변화 완화 조치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이 때 영향은 넷제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려와 함께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가?
- 회사는 물리적 기후 변화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예를 들어, 폭염의 가능성 증가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취약한 지역사회의 물 접근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 기업이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가치사슬에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간 동안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는가?
- 기후 리스크 관리 전략에서 회사는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 외에도 가치사슬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가?
- 기후 변화로 인해 비즈니스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경우(예: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가?
-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 수준에서 회사의 기후 행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인권 포함)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가?
- 기업이 탄소중립 전략에 너무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물리적 기후 변화나 사업 운영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SOURCE: Shift, "Climate action & Human Rights" (2023, 2.)

© IGT,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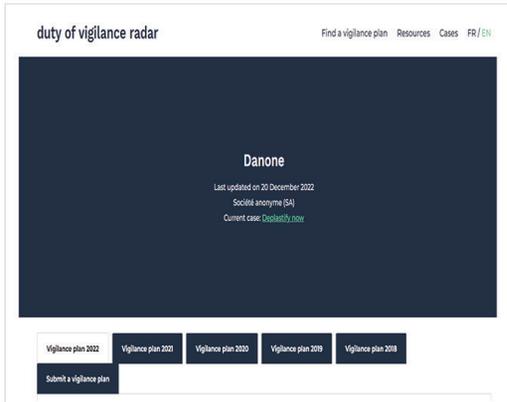
36

4. 기후실사 의무 위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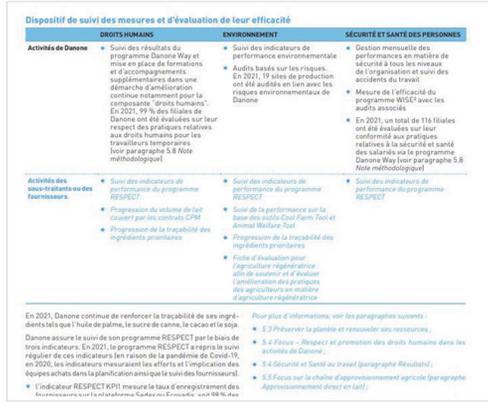


프랑스 기업실사의무화법 영향 (1/4)

기업은 기업실사의무화법 상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프랑스 기업실사의무화법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과 그들의 공개정보를 모니터 및 트레킹하고 있음



© IGT. 2023



SOURCE : Duty of Vigilance radar HOMAPAGE 38

프랑스 기업실사의무화법 영향 (2/4)

2017년 프랑스는 기업실사의무화법(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프랑스 대법원은 시민단체도 청구인 자격을 갖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 소송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음

프랑스·우간다의 인권·환경보호단체 6곳, 우간다 지역 대규모 석유 시추 사업 관련 Total의 이행명령 청구

[제소 사유]

- (인권)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
-원주민은 급작스럽게 토지, 집, 농지, 작물 등의 소유권을 잃어 일상 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학생은 교육 기회를 박탈당함
- (환경) 송유관이 국립공원과 나일강 하류지역 등 수자원과 밀접하고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지역을 통과해 환경변화·오염 우려
-원활한 운송을 위해 송유관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야 하며, 이때 배출되는 열과 탄소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우려

[기업 대응]

- '20년 연간보고서 통해 기업실사의무법 관련 계획 및 사업 시 법이행을 위한 계획 및 실행내용을 상세 기술

[진행 경과]

- 토탈이 우간다 및 탄자니아 현지 주민에 대한 배상 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시민단체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에서 계류 중임

© IGT. 2023

SOURCE: KOTRA (23.03. 02.)

세계최대 수자원기업 Suez, 인권단체 4곳으로부터 자회사(ESSAL)의 철레 식수원 사업 기업실사의무법 위반혐의로 제소

[제소 사유]

- (인권) 일 ESSAL이 운영 중인 Caipulli 식수원에 2천 리터의 원유 유출로 10일간 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주민 생활, 건강에 위협 초래
- ESSAL은 사고 발생 즉시 깨끗하고 충분한 양의 대체 식수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에 실패
- 18년 철레 수자원 감독기구가 인프라 구축, 사고대처 등 안전성 관련 ESSAL에 경고 및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지적

- (환경) Rahue강 및 Damas 강에도 원유가 흘러들어 생태계 오염을 유발

[기업 대응]

- 기업실사의무법 준수 위한 노력했으나 자회사 자본 매각

[진행 경과]

- 인권보호 단체는 Suez의 자회사 매각에도 식수중단 사태 당시 Suez에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자본 매각 후에도 소송 계속한다는 입장

SOURCE: KOTRA (23.03. 02.)

39

프랑스 기업실사의무화법 영향 (3/4)

2017년 프랑스는 기업실사의무화법(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프랑스 대법원은 시민단체도 청구인 자격을 갖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 소송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음

BNP 파리바도 소송, 삼림 벌채 기업과 거래 았겠다 했지만 실사 없이 자금 지원



- 1) 옥스팜, 지구의 친구들 등 환경단체 3곳이 BNP 파리바가 200개 이상의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와 8개의 유류 및 북미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자금을 간접지원해 법적 구속력이 기업실사의무화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 2) 인권 및 환경단체는 BNP 파리바가 삼림 벌채와 탄소 배출을 야기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고, BNP 삼림 벌채에 관한 금융정책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을 완전히 추적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기업실사의무화법 위반이라고 주장

© IGT. 2023

SOURCE: 임팩트온(23.03. 02.)

프랑스 맥도날드 노동조합이 브라질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침해에 대해 자사에 공식경고



맥도날드의 프랑스와 브라질 노조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기업실사의무화법을 준수하라는 공식경고.

맥도날드가 세계 최대 습지인 브라질 판타날(Pantanal)과 아마존 열대 우림의 삼림 벌채 및 강제 노동 등에 연루된 공급업체들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환경 위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임.

SOURCE: BSR (22.03.30.)

40

프랑스 기업실사의무화법 영향 (4/4)

그린피스 프랑스는 프랑스 전력회사에 러시아와 핵에너지 사업 관계 중단을 독촉하며 프랑스 기업실사의무화법에 따른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를 주장함

그린피스, 프랑스 원전 잠입해 또 기습시위 **2017**

2017년 11월 22-17 | 2017년 11월 23-34

국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 활동가들이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에 잠입해 태극기에 취역하다는 점을 알리는 기습 시위를 또다시 벌였다.

© IGT. 2023

LegalAccountability @cla_bhrrc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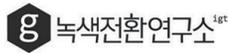
#France: Greenpeace sends formal notice to EDF & Orano to drop business relationships with #Russia to comply with duty of vigilance law #mHRDD

business-humanrights.org
France: Greenpeace sends formal notice to EDF & Orano to drop business relationships with Russia to...

11:58 PM · Mar 22, 2022

41

5. 마치며



기업의 목적은? 이윤 vs 이익

프랑스는 2019년 기업의 목적을 이윤추구로 두고 제정된 상법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기업, 공익의 목적
(L'entreprise, objet d'intérêt collectif)

기업은 이익 추구라는 목적 이외에 나름의 존재의 이유(raison d'être)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존재의 이유는 이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회사가 추구해야 하는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며 단기실적주의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은 발명, 혁신, 집단적 창조와 같은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속될 수 있고, 생태계 안에서 고객, 공급업체, 하청업체 등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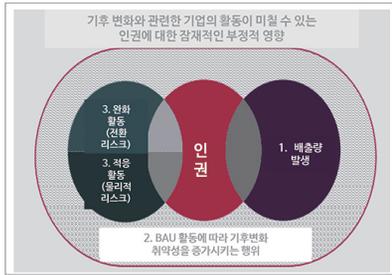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2019. 5. 22.자 2019-486 법률 제정
 ① 회사의 이익 및 회사 의사결정 시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 의무 규정
 ② 회사 존재의 이유를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임무기업 제도의 신설

자율적 기업. 혁신적 기업. 공정한 기업

기업의 기후책임

기후 변화가 기업의 다른 '환경' 문제(물 스트레스, 생물학적 손실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및 '거버넌스' 요소와도 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음.



1. 온실 가스를 생성하거나 온실 가스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 파괴에 기여하는 등 비즈니스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가 기후 변화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
2. 비즈니스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가 기후변화 취약성을 높이고 회복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3. 기업이 기후변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기후변화 행동을 하는 것
4. 기후 변화의 물리적 위험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적응 조치

SOURCE: Shift, "Climate action & Human Rights" (2023. 2.)

기후변화를 단순히 비즈니스 성과에 재무적 위험(및 기회)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로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은 인권중심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하고 기후전략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해야 함!

© IGT. 2023

44



녹색전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고
현장기반으로 연구합니다

홈페이지

igt.or.kr

연구소 후원

bit.ly/녹색전환연구소후원하기



토론

토론문

최우리(한겨레 기자)



토론문

최우리(한겨레 기자)

0. 대기업 공급망 관리 사례(집단 교육 현장)를 취재하다 느낀 점

- 대기업이 나서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사례로 비춰질까 매우 염려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나서서 교육시켜주니 고맙지만 추상적 교육에 그쳐 한계를 토로함.
 - > 둘 사이의 간극을 발견할 수 있었음.
- 한국 기업들은 동색이 아님. 서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협력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이해관계가 달라짐. 대기업은 여론 혹은 갑질 프레임에 두려워할 뿐 근본적으로는 대기업에 기타 기업들이 종속된 위계관계.
 - > 기업 내부, 혹은 기업들간의 현재 문화, 관행 등은 공급망 실사 관리를 형해화할 수 있음. 이 때문에 거버넌스의 개혁과 사회적 소통, 실질적 실사 방법론의 고민이 더욱 요구됨.

1. 기업의 기후 책임 입증과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 대기업 기준 10~15년째 지속가능보고서, ESG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 스코프3 측정 정확도 등 정보의 신뢰도를 따지지 않는다고 할 때 대기업은 정보 공유 중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단편적 정보가 모든 것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음.
- 공시 의무화 관련해서도 금융, 자본 그룹쪽 간에도 의견차이 발생. 거래소 기준으로 진행되어온 공시 의무가 자본시장법에 의해 사업자의 처벌 가능성을 포함해 의무공시화되어야 한다는 흐름에 반발하는 그룹도 있음.
- 국가 단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석유나 정유 화학, 자동차, 철강 등 화석연료 기반 제조업과 산업군이 한국 수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발도 있는 것이 사실.



- 이에 기업은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중.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 틀 안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업은 일부 글로벌 대기업에 그치고 산업계 전반의 변화 속도가 더뎠을 수 있음.

---> 결국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가지 길을 동시에 밟아가야할 수밖에 없음.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기후행동(그린워싱 여부, 중장기 사업계획의 탈탄소 정도, 녹색금융 정책 등)과 한국 기업과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책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

2. 투자자 대상 공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 한국도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ESG를 중심으로 대비 중이나 투자자 그룹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적 차원이라는 한계. 실질적 비교, 데이터의 정합성 등은 고려되지 않음.

- 또 탄소배출권 거래, 개발도상국 조림사업 등 자본, 탈탄소 정책만이 남아 근본 철학을 앞섰다는 평가도 나오기도. 근본적 철학 부재 지적 계속되어 오는 중.

---> 주주나 투자자 대상의 공시 의무화 움직임도 중요하고 이러한 규제에 기업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사회적 영역에서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직관적인 방식의 사업과 정보의 공유와 공개 형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의와 인권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 조직체계,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토론

토론문

나현필(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문

나현필(국제민주연대 국장)¹⁾

1. 한국에서의 “인권실사”의 현황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고, 대표적인 것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권경영도입이었다. 그러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사가 작동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권경영을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부족한 탓도 크지만, 법률로써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의 기관평가에 의존하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행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분기점은 2018년에 제정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였다. 인권존중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 만들어진 제3차 NAP에서는 “기업과 인권”이 별도의 장으로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이행원칙에 대한 용어조차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부부처들의 관련 내용을 모아다가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포함해서 정부가 인권실사의 내용을 어떻게 제도화시킬지에 대한 정책방향은 보이지 않았고, 구제와 관련해서 유일한 정부기관인 한국NCP의 계획은 “동료평가를 통해서 선진국 NCP의 운영경험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수준이었다.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이하, 실사의무화법)들이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정되는 상황 속에서, 이행원칙에 대한 정부차원의 이행의지가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만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돌파구가 보였다. 바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인권정책 기본법이었다.

1)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을 2006년부터 해왔으며, 2012년에 만들어진 기업과인권네트 워크에서 계속 활동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및 법무부 인권국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인권정책에 감시 및 대응 하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진 7개 인권단체 모임인 인권정책대응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의 핵심은 NAP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것이었다. 거기에 국가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실사(여기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으로 표현)를 실시해야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기업의 인권문제, 특히 인권실사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에 발의된 이법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고, 정부여당도 야당도 이 법의 통과에 대해 관심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리고 2024년 총선결과와 별개로, 현 정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

유럽국가들처럼 한국에서 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추진되었고,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 올해 내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전망이다. 통과가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이 기업에게 규제가 되는 법률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무력화하겠다는 현 정부가 실사의무화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하나의 정부나 야당에게 이법의 통과를 추동할 이해관계자가 부족하다. “인권”이란 용어가 들어간 법만 보면 실력행사를 불사하는 이해집단은 있으나,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이 법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국 관료집단의 행태를 제어할 시스템이나 정치적 리더쉽이 없는 상황에서는 설사 법이 통과되더라도 한국NCP가 보여주는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 자체는 잘 설계되더라도 실제 이행에 있어서 실무(기업에게 포섭되거나 포섭되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관료들이 맡는 다거나, 구체적 사안에 판단을 내릴 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기업들에게 면죄부만 남발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2. 기후실사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

- 인권환경실사의 확장으로서의 기후실사가 아니라 기후실사라는 독자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인권”은 배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기후위기가 훨씬 대중적으로 소구되는 영역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유권자 집단의 등장 가능성이 높다면 정치가 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실행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정치나 여론지형은 “신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그런면에서 2023년 초로 예상되는 제4차 NAP수립과정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 입장에선 기후위기 의제를 많이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이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 의제를 최대한 남겨두어야 평가라도 가능하다.

- 실사의무화법 논의 전반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분리해서 살펴볼 때, 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실사에도 무관심한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후실사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환과정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이 노동조합/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문제이다.
- = 실사의무화법 도입 과정 전반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사의무화법에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이해요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호사들이 정말 이 법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주요 고객인 기업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실사의무화법을 활용할지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 좋은 제도도 한국에 도입되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설계하는 국회가 한국사회를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요구만 언제나 과대대표되어 온 한국의 정치구조를 감안할 때, 실사의무화법의 통과는 차기 국회에서도 장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 실사의무화법 통과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낮아 보이는 것이 한국NCP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일 수 있다. 법을 제정하기보다 비사법적 구제수단인 NCP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 4명의 민간위원 중에, 환경/기후 전문가를 한명이라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기후 및 환경관련 NCP진정에 대한 NCP차원의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있다.
- 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당사자/피해자들이 조직되고 실사법 제정을 이해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기준이 이러하니 우리도 해야한다는 당위로는 실제 법률을 제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부족하다.

토론

토론문

강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



토론문

강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

“법은 법률가만 다룰 수 있는, 생명력을 잃은 원칙 체계가 아니다.

서로를 향한 의무를 나타내는 우리의 사회적 표현이다.”

- 책 <최후의 전환> 중에서

‘기후’는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태·사회적 기본 조건

기후변화는 이제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안보를 해치는 실존적인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지구 공동체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결과이자, 인간을 비롯한 생명들의 터전이라는 ‘조건’이 위협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지속적인 탄소배출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고, 탄소배출의 위험성을 은폐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의 배출량과 기후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하고 크다 하더라도, 기업 규제는 쉽지 않다. 기후실사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토론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후실사의 대두> 논문(이상수, 2023)을 바탕으로 기후실사에 대한 세 가지 의의를 짚고자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정치적 관계와 조건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풀어 갈 과제를 연결해 보고자 한다.

정치적 관계 및 조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으로서의 기후실사

기후실사의 핵심은 ‘기업이 자신의 주도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과 자신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측정한 후, 이를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이 전체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통해 기후실사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조밀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상수, 2023)

(1) 기후실사의 목적: 기업의 위험책임 외주화 방지

(a) '실사'를 말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외주화하는 것을 막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공급망 혹은 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계획을 세움에 있어 공급망에서의 배출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

(2) 기후실사의 효과: 정보의 투명성 - 다양한 주체들의 개입 여건 증진

(a) 기후실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업의 기후실사를 감시 압박 권장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 기후실사 접근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보장한다는 점에 그 잠재력이 있다.

(3) 기후실사의 조건: 정치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

(a) 기후실사 체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이해 관계자는 국가일 것. 국가는 기후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기후실사 의무화법이 제정되면 실사의 부재, 허위, 오도 등 형식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감축목표, 부실한 계획, 부실한 실행 등 실질적인 측면에 개입할 여지가 만들어진다.

기후실사를 도입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 형성: 생태공화국 구상

위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동의되는 지점은 기후실사의 조건, 즉 정치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다. 기후실사를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적 조건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운동은 기존 질서의 변동을 목적으로 공동된 정체성을 가진 행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된 행동이다(Goode, 1992). 이로부터 사회운동은 기존 질서의 변동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저항적이고 정치적인 특성을 갖고, 구체적인 행위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집합적 행위자로 파악할 수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더 나은 지구를 정치적으로 상상하자'는 구호 아래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운동 조직이다. 50여 명의 활동멤버 구성원들은 '우리는 모두 정치적인 주체이자 생태적인 존재'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함께 일하고, 관계 맺고, 의사 결정을 한다. 2022년 11월 청년기후긴급행동 내부 토론회에서 나는 '생태공화국 구상'을 공유한 바 있다. 생태공화국이라는 아이디어의 요지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궁극적으로 생명살림과 돌봄을 이행하는 단위로서의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초래한 근대 산업문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공동체적 관계와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 '국가', '기업'을 방치한 채 탈정치적인 접근으로는 불충분하다.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인류의 지배·착취·약탈을 끝내겠다는 정치적 결의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을 강화하기보다는, 현재 당면한 기후생태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태문명을 열어갈 국가 질서를 논의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치적

다수를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생태공화국은 국가의 안녕이 지구 생태계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현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생태공화국 구상의 취지에 따르면 헌법에 ‘국민’은 지구 공동체에 깊이 의존하며 상호적 관계를 이루는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이 명시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맺으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 중 탄소량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지구 생태계 조건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 공동체 내 인간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성찰하고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홍은주, 2020)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위기 대응 담론의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일 수는 있더라도, 전부는 아니다.

나는 기후위기 문제를 다룰 때 ‘온실가스’ 문제로만 국한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는지 스스로 종종 돌아보고 점검한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인간이라는 종(species)이 지배와 착취를 기반하는 문명을 만들었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인간 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들을 비롯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관계를 거부하고 재구성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후실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으며 정책 중심으로 국한되거나 온실가스 감축 담론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기후실사라는 접근이 우리 사회가 기후 문제를 책임있게 직면하기 위한 상상력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

토론문

김현주(국가인권위원회 주무관)



토론문

김현주(국가인권위원회 주무관)

2023년 7월, 지구는 가장 뜨거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중국 신장지역의 기온은 7월 16일 52.5°C에 도달하며 새로운 국가기록을 세웠고, 미국의 도시인 피닉스는 7월 내내 43°C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센터 발표에 따르면, 2023년 7월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0,000년 동안 이렇게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유엔사무총장 Antonio Guterres는 “지구온난화 시대가 종식되고, 지구가 끓는(boiling)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풍우에 휩쓸린 아이들, 장맛비에 무기력한 노인들,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불길을 피해 도망치는 가족들, 해수면이 높아져 밭을 땅 자체가 사라지는 이주민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룰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바로 기후위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유권(생명권), 사회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연대권(깨끗한 환경권)과 직결되어 있고,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생명권, 식량권, 위생에 대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자기결정권, 교육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때, 국가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따라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2022. 12. 정부(대통령)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표명을 하면서 ‘기후위기 문제는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단순 재난이 아닙니다. IPCC 평가보고서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기후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위기는 높은 신뢰도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재난이 충분히 예측된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를 예방할 당연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법부 역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책임을 면책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¹⁾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탄소중립

1)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①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²⁾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헌법소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8.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의회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감축의무는 기업도 피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비교적 가해책임과 보호책무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이 상이한 기후 불평등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업의 인권 경영 촉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따르면, 에너지 및 산업공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5.7%를 차지하고, 2020년 자산총액 기준 상위 11대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총배출량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2022. 12. 정부(대통령)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공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21년, 헤이그법원은 석유기업인 로열더치셸(Shell)에게 파리협정 및 UN 기업 및 사업에 관한 지침 원칙 목표에 기반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22년,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기업의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국 영토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지난달 유엔환경프로그램(ENDP)은 글로벌 기후소송보고서에서 기업책임을 강조하는 기후 소송을 다루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기후공시 확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린워싱 종식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기후변화와 인권, 그리고 인권경영은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2)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는 모든 인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였으며³⁾, 유엔인권 이사회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가인권기구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⁴⁾. 이에, 인권위는 기후위기 문제에 인권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대응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기업의 인권 경영 측면에서의 기후공시 관련 실태 조사 실시, 공급망 실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후위기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면서도 피해의 양상은 취약성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에 국가는 기후취약계층 적응 강화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 정의 달성은 국가와 시민사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기업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같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기후정의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 기후위기 문제와 기업책임을 다루는 토론회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3) A/RES/76/300

4) A/HRC/51/L.16/Rev.1.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발행일 2023년 8월 16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화 (02)2125-9838 FAX (02)2125-9813

인쇄처 디자인모장

전화 (02)2278-1990 FAX (02)2278-1992

I S B N 978-89-6114-966-2 9332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사회인권과
Tel : (02)2125-9838, Fax : (02)2125-0913 <http://www.humanrights.go.kr>

ISBN : 978-89-6114-966-2 93320